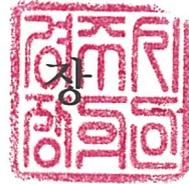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경 주 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 (안 제6조의2)
 - 주간 작업 원칙 예외사항 신설
 - 3인 1조 작업 원칙 예외사항 신설

3.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22. 4. 22. ~ 5.1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자원순환과장)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 연락처: 054-779-6692, 팩스: 054-760-742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8103] 경주시 양정로 241-1 기린빌딩3층(동천동)
경주시 자원순환과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 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나.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 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 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소로지역을 소형차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u>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 style="padding-left: 2em;"><u>라.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u></p>

마.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 구역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 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폐기물 종류, 작업 환경과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